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자금 이자지원”, “대학생”, “고등교육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나. 시장은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함. (안 제3조)
- 다.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 (안 제4조)
- 라.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군수·구청장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마.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금액, 한도,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7(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법 제6조에 따른 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은 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군수, 구청장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조건, 금액,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심의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중복금지 및 수급자격의 정지

제15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6조(수급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확정된 자가 주소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